

##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Q&A

Q. 외국인이 숙박업소에 투숙 시 숙박업자가 이를 법무부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같은 감염병 및 테러 위기 상황에서 국내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도\*를 '20. 12. 10. 시행하였습니다. 숙박신고제도가 적용되는 시기에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업자는 외국인으로부터 여권 등을 제공받아 숙박신고시스템을 통해 단기체류외국인의 숙박정보를 법무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붙임 1)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도의 법적근거' 참조

Q.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숙박신고 의무가 있는 숙박업자는 누구인가요?

A.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가 해당합니다.

Q. 숙박업자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테러센터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테러경보를 발령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단기체류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 발령 12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시기에는 숙박신고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보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상향되며, 숙박신고제 적용 여부는 숙박신고시스템 웹페이지([www.k-eta.go.kr/trds](http://www.k-eta.go.kr/trds))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단기체류외국인”이란 누구인가요?

A.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이 부여된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 ‘(붙임 2) 단기체류자격 외국인’ 참조

### 참고 숙박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을 소지한 자는 장기체류외국인에 해당하므로 숙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입국 시 교부받은 입국심사증의 체류자격이 “C-3”이므로 숙박신고 대상입니다.

단기체류 자격은 ‘B-1’, ‘B-2’, ‘C-1’, ‘C-3’, ‘C-4’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객이나 항공사 승무원 등이 해당하며,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을 소지한 외국인 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현역 미군, 군속(군무원) 등은 장기체류자격 소지자로서 숙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Q. 어떻게 신고하나요?

A.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배너를 통해 이동 또는 [www.k-eta.go.kr/trds](http://www.k-eta.go.kr/trds)에 직접 접속하거나,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숙박신고”를 검색 후 “외국인숙박신고” 앱을 설치하여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신고 방법은 시스템에 등재된 안내 동영상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PC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없거나 숙박신고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붙임 3) 임시 신고서식’을 이용하여 임시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4)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연락처’를 참고하여 관할 관서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외국인인 여권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신고제가 적용되는 시점에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여권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여권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숙박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 책임은 숙박업자가 아닌 해당 외국인에게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사람이 없는 '무인텔'과 같은 숙박업소의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투숙을 위한 자동화 체크인 기기 옆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안내문'을 부착하시어, 해당 외국인이 투숙하는 경우 관리자 호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 '(붙임 5)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안내문(영문)' 참조

**Q. 숙박업소에 단시간 머무르는 외국인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숙박업소 객실에 잠시라도 머무는 외국인은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Q. COVID-19 시설격리 장소 등으로 지정된 숙박업소도 숙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검역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 격리시설' 및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된 숙박업소의 경우, 해당 시설로 지정된 기간 내 숙박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숙박업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숙박업자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붙임 1】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도의 법적근거

###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 ①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숙박외국인"이라 한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숙박업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숙박업소에서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2.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
- ②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숙박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숙박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및 자료 제출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00조(과태료) ①, ②, ④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의2.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
- 1의3. 제8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
-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 【붙임 2】 단기체류자격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11.>

### 단기체류자격(제 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사증면제 (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관광·통과 (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3. 일시취재 (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4. 단기방문 (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 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단기취업 (C-4)	가.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별표 1의2 중 14.교수(E-1)부터 20.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서**  
(Declaration Form of Lodging Registration)

숙박업소 기재란 (for accommodations)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업 소 명	
③소 재 지	
④전 화 번 호	

단기체류 외국인 투숙객 기재란 (for short-term stay visa holders)					
연번	투숙일자 (Date)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여권번호 (Passport No.)	투숙기간 (Length of Stay)
1					
2					
3					
4					
5					
6					
7					
8					
9					
10					

(yyyy) 년 (mm) 월 (dd) 일

**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신 고 안 내**

1. 본 서식은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에 따른 임시 신고서식입니다.
2.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 적용됩니다.
3. **관광·방문 등 목적으로 국내에 90일 이내 체류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위의 위기경보 발령 시, 숙박업자에게 본인의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숙박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4.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투숙중인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본 서식을 활용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E-MAIL,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숙박업자는 신고접수 확인 후 신고서식 및 해당 외국인의 정보를 파기하시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한 외국인 및 숙박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숙박업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00조3항에 의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붙임 4】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연락처

기관명	관할구역		E-MAIL	전화	FAX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	관악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	seoulimmigration@korea.kr	02-2650-6261 010-2035-8593	02-2650-4541
	경기	성남시, 안양시, 하남시, 과천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서울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sejongnoimmigration@korea.kr	02-731-1771	02-734-1826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seoulsouthimmigration@korea.kr	02-6980-4913 010-2670-6219	02-6980-4985
	경기	광명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	전체	incheonimmigration@korea.kr	032-890-6365 010-2036-6733	032-890-6380
	경기	부천시, 김포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	경기	안산시, 시흥시	ansanimmigration@korea.kr	031-364-5723 010-2781-7798	031-401-5724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경기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suwonimmigration@korea.kr	031-695-3935 010-2036-7296	031-695-3930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경기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pyeongtaekimmigration@korea.kr	031-8024-9617 010-3980-1345	031-8024-9640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고양시, 파주시, 구리시,	yangjuimmigration@korea.kr	031-828-9491 010-4316-3451	031-828-9467
	강원	철원군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	전체	busanimmigration@korea.kr	051-461-3085 010-5442-7161	051-461-3080
	경남	양산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	경남	김해시, 밀양시	busanimmigration@korea.kr	055-344-7835 010-3476-1345	055-344-7812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	전체	ulsanimmigration@korea.kr	052-279-8043 010-2016-7195	052-279-8058
	경북	경주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남	진주시, 창원시, 거창군, 고성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changwonimmigration@korea.kr	055-981-6007 010-4947-9275	055-247-9148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	전체	jejuimmigration@korea.kr	064-741-5440 010-6816-3451	064-741-5492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yeosuimmigration@korea.kr	061-689-5653 010-2018-7504	061-684-6975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	전체	gwangjuimmigration@korea.kr	062-605-5221 010-6546-3451	062-605-5277
	전남	나주시, 함평군, 장성군, 담양군, 영광군,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목포시, 완도군, 신안군, 무안군, 진도군, 영암군, 해남군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북	전체	jeonjuimmigration@korea.kr	063-249-8693 010-4349-3451	063-245-6168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	전체	daeguimmigration@korea.kr	053-980-3551 010-6820-3451	053-980-3587
	경북	전체 (경주시 제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강원	전체 (철원군 제외)	chuncheonimmigration@korea.kr	033-269-3209 010-4350-3451	033-269-3297
	경기	가평군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	전체	daejeonimmigration@korea.kr	042-220-2130 010-7249-3451	042-255-0496
	충남	전체			
	충북	영동군, 옥천군			
	세종	전체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충북	전체 (옥천군, 영동군, 세종시 제외)	cheongjuimmigration@korea.kr	043-230-9073 010-2033-4093	043-236-4999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 Lodging Registration

required from *10 December 2020*



**All short-term stay visa holders should**

- Register lodging info during check-in
- Present passport at counter
- Fill out Declaration Form

**Non-compliance will result in KRW 500,000 fine**

Visit the [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for more info.